

●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20-136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-111호(2017.11.22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185호(2019.6.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, 동법 시행령 제6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하고, 동법 제78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54)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에게 보입니다.

2020년 10월 2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-2 일대

다. 정비구역의 면적 : 5,573.1㎡

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
- 시 행 자 : 더유니스타제삼차(주) 대표 박래영

-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, 214호

마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20년 10월 21일

바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건 폐 율 (%)	연 면 적 (㎡)	용 적 륜 (%)	층 수 (층)	높 이 (m)	용 도
4,279.5	2,445.89	57.15	62,095.36	908.57	지상20 /지하8	69.33	공동주택, 근생시설

2)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공급 계획	공 대 급 상	건축시설(㎡)			
		공동주택		근린생활시설	
		대 면 지 적	건 축 연 면적	대 면 지 적	건 축 연 면적
	계	3,850.87	55,875.96	428.63	6,219.39
	토지등 소유자			428.63	6,219.39
	일 반 공 급	3,850.87	55,875.96		

3)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

신 설				용도폐지			
종 류	규 모 (㎡)	설치비용 (원)	관리청	종 류	규 모 (㎡)	국·공유지 (㎡)	무상양여 (㎡)
녹지	1,293.7	22,470,730,000 시행자 부담	서울시 중 구	도로	741.4	741.4	623.3

사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철거완료

아. 관계서류 : 도심재생과 비치서류와 같음